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9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최호정, 강석주, 김규남,
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지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서상열, 송경택, 유만희,
윤종복, 이봉준, 이성배,
이은림, 이종태, 이종환,
임규호, 임춘대, 최민규,
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시장으로 하여금 주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격년에 한번 탐사토록 하는 한편, 점검 결과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땅꺼짐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(안 제12조제1항).
- 나.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,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토록 함(안 제1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”를 “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(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)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공동조사 대행 등)”을 “(공동조사 주기 및 대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”를 “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주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격년에 한번 탐사토록 하는 한편, 점검 결과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땅꺼짐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(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자료로 2026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공동조사 계획(안)을 첨부함(붙임1)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붙임 1 2026년도 공동조사 계획(안) ※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

- **조사대상 : 서울특별시도 181개 노선 및 굴착공사장·민원요청구간 등**
 - **조사수량 : 20,200km**(시도 11,000km + 굴착공사장·민원요청구간 등 9,200km)
 - ※ 민간용역(10,200km) : 시도 2,200km + 굴착공사장(철도포함) 4,000km + 자치구 지원 4,000km
 - ※ 市전담팀(10,000km) : 시도 8,800km + 민원·요청구간 1,200km
- **조사체계 : 정기점검(시도 181개 노선) + 특별점검(굴착공사장·민원요청구간 등)**
 - **정기점검 : 시도 181개 노선 매년 전수조사(11,000km)**
 - 법정업무 : (민간용역) 시도 2,200km. 연1회 조사 *용역비 증가없음
 - 법정업무外 : (市전담팀) 시도 8,800km. 연1회 조사 *확인조사복구 14억원(증)
 - ※ 법정업무 :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서울시 지하안전조례 제13조에 의해 공동조사용역 시행
 - ※ 市전담팀은 민간용역 구간외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GPR 탐사 수행
 - **특별점검 : 굴착공사장·민원요청구간 등 조사(5,200km) *용역비 14억원(증)**
 - 철도, 터널공사 등 굴착공사장 : (민간용역) 4,000km(340km×12회, 월1회)
 - 민원 및 요청구간 등 : (市전담팀) 1,200km(연중 수시 수행)
 - **자치구 지원 : 우선점검구간 및 굴착공사장(4,000km) *지원비 15억원(증)**
 - 지원대상 : 자치구 선정 우선점검구간 및 자치구 인허가 굴착공사장(4,000km)
 - 조사방법 : 매년 시 예산 30억원 투입, 시·구 매칭사업(시50%,구50%)

구분	(현재)2025년	(개선)2026년	증가사유
조사연장(km)	10,850 · 정기점검 2,300 · 특별점검 6,700 · 자치구지원 1,850	20,200 · 정기점검 11,000 · 특별점검 5,200 · 자치구지원 4,000	1.9배 증가 (증 9,350) 시도 181개 노선 매년 전수조사 굴착공사장 및 자치구 조사수량 증가
소요예산 (백만원)	8,050 · 정기점검 3,629 · 공동확인조사 437 · 굴착복구 784 · 공사장조사 1,700 · 자치구 지원 1,500	12,346 · 정기점검 3,630 · 공동확인조사 800 · 굴착복구 1,836 · 공사장조사 3,080 · 자치구 지원 3,000	1.5배 증가 (증 4,296) 자체 조사 증가에 따른 공동확인 수량 증가 시도 조사 증가에 따른 복구수량 증가 공사장 조사수량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 자치구 선정 우선점검구간 등 지원 수량 증가

※ '25년 예산 : 본예산(4,850백만원) + 재난관리기금(공사장조사+자치구지원 3,200백만원)
 ※ '25년 차량형GPR 3대 장비구입비(15억원) 및 행안부R&D 공모사업(1억원) 별도
 ※ '26년 예산부터 전액 본예산 편성